

의안번호	제 31 호
의결 년월일	2004. 9 . .

의 결 사 항
------------------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9. 7.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년월일	2004. 9. 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법령 명확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 제89조제4호

나. 법령의 개·폐 등에 따라 인용법령 정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 제7조, 제7조의2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도시재개발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

##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4. 8. 9 ~ 2004. 8. 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사천시 공고 제 호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제89조” 를 “제89조제4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중 “제7조” 를 “제7조·제7조의2”로 하고, 같은조제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3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중 토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23조의2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사목·같은조제2호바목 및 같은조제3호 바목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같은조제3호사목중 “제19조의3” 을 “제19조의2”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중 “제7조” 를 “제7조·제7조의2”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9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b></p>	<p><b>제19조(-----) -----, 제89조제4호, -----</b></p>
<p><b>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li> <li>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u>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li> <li>4.~6. (생략)</li> </ol>	<p><b>제19조의 2(-----) (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제7조·제7조의2</u></li> <li>3.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u> -----</li> <li>4.~6. (현행과 같음)</li> </ol>
<p><b>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1.~2. (생략)</li> <li>3. <u>도시재개발법 제4조</u>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토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li> <li>4.~6. (생략)</li> </ol>	<p><b>제21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1.~2. (현행과 같음)</li> <li>3. <u>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u> ----- <u>정비 구역안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u> ----- <u>정비</u></li> <li>4.~6.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p>② ~ ③ (생략)  1.~4.(생략)  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u>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u>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u>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생략)  가.~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생략)  가.~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3. (생략)  가.~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u>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u>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u>제19조의3제1호</u> 내지 <u>제3호</u>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공유재산</p>	<p><u>제23조의2(-----)</u>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u>  -----  -----  -----  -----  -----  -----  -----</p> <p>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2.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3.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u>-----</p> <p>사. <u>제19조의2</u>  -----  -----</p>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p> <p>① (생략)</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p>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u>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p> <p>3.~4. (생략)</p> <p>②~⑥ (생략)</p>	<p>제38조의2(-----)</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제7조·제7조의2</u>, ----- ----- ----- ----- -----</p> <p>2. <u>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u> -----</p> <p>3.~4. (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제22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7條 (一般地方産業團地의 지정<개정 2001.1.29>) ①一般地方産業團地는 市·道知事가 지정한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産業團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一般地方産業團地의 指定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市·道知事は 一般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 없이 이를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は 그 지정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관하여 이를準用 한다.

⑥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過程에서 關係機關 간의 意見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으며, 調整을 요청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調整할 수 있다.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 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7조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시·도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型工場"이라 함은 同一建築物안에 다수의 工場이 동시에 入住할 수 있는 多層型 集合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8條의2 (아파트型工場의 設立등)** ①第13條·第13條의2·第13條의3·第13條의4· 第13條의5·第14條·第14條의2·第14條의3·第14條의4 및 第18條의 規定은 아파트型工場의 設立承認, 認·許可등의 擬制, 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처리기준의 告示등, 設立등의 承認取消, 建築許可, 사용승인, 製造施設設置承認, 製造施設設置承 認의 取消 및 協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아파트型工場을 設立한 者가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에게 아파트型工場設立完了申告를 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 令이 정하는 중요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市長·郡守·區廳長 또는 管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 設立完 了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型工場臺帳에 登錄하여야 한다.

④管理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의 登錄을 한 때에는 이를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 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당해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②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사업
  - 가.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3항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⑥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⑨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채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  
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사항으로서 도지사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